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-163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11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(안 제2조제1호,제3호)
- 나. 조문 정비(안 제4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: 2024. 10. 10. ~ 10. 30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원안 동의

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**홀로 사는**”을 “**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**”으로, “**등의
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,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**”을
“**등으로 임종하는 것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**1인 가구**”를 “**가구**”로 한다.
제4조 중 “**고립 가구**”를 “**고립가구**”로, “**관하여**”를 “**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**”
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고독사”란 가족·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·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,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“사회적 고립가구”란 가족, 이웃, 친구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.</p> <p>4. (생략)</p> <p>제4조(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)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사회적 고립상태</u> <u>로 생활하던</u> ----- ----- <u>등으로 임종하는 것</u>----- 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 <u>가구</u>-----.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) ---- ----- <u>고립가구</u> ----- --- <u>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</u> ----- ----- -----.</p>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
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추계 대상 아님

4. 작성자: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정환주 (☎ 3153-8834)